202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

- 사망 후 특별승진(추서)시 기준소득월액 가산방식 구체화(법 개정 후속조치)
 - (개정배경)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·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공무로 사망·전사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그 직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산정하는 「공무원연금법」·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개정(25.7.8. 시행)
 - (주요내용) 공무원 보수유형별(호봉제·연봉제 등) 기준소득월액 가산방식 규정, 연금취급기관의 특별승진 임용사실 통보 및 자료제출 의무 부여
- 퇴직일시금 합산반납금 가산이자 부담 경감 ('26.1.1. 시행)
 - (개정배경)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자(평균금리)와의 형평성 고려
 - * (반환일시금) 국적상실, 국외이주 등 사유로 지급 → 이자 가산해 반납시 가입기간 회복
 - (주요내용) 퇴직일시금 합산반납금 가산이자를 매년 1.1. 전국은행 정기예금의 최고금리에서 평균금리로 변경
 - ※ 퇴직연금(공제)일시금은 종전과 같이 최고금리 적용
- 퇴직급여·수당 전화 청구 대상범위에 장애인 공무원 추가
 - (개정배경)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취지, 장애인 고용 증가 등 고려한 편의 제고
 - (주요내용) 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장애인은 전화로 퇴직급여·수당 청구 가능
-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확대
 - (개정배경) 정부방침의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,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
 - (주요내용) 대여학자금 상환시 특례 적용대상 확대(3자녀 이상→2자녀 이상) ※ (상환특례) 1자녀 우선상환, 나머지 자녀의 학자금은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거치

○ 증빙서류 간소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

구 분	종 전	개 정
해외 연금수급자 등의 신상조사 방법 현실화	• 해외 연금수급자는 매년 신분변동 관련 사항을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	• 출입국사실증명서, 세금신고증명서 등 신원확인서류의 제출로써 재외공관장 확인을 갈음
장해 해소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 신청 증빙서류 변경	• 19세 이상 자녀·손자녀의 장해 상태 해소 사실의 확인을 위해 "요양기관의 진단서"를 징구	• 장해해소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증빙서류를 "장애인등록증 등"으로 변경
수급자 신상변동 관련 요청가능한 자료범위 확대	•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등 26종	•「감염병예방법」상 예방접종 자료, 「도로교통법」상 운전면허, 교통사고·법규 위반 관련 정보 추가
선출직 임용시 확인방식 체계화	-	• 공단이 「공직선거법」상 당선인 정보를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

참 고 시행령 일부개정 Q&A

[사망 후 특별승진에 따른 급여가산]

Q1. 사망 후 특별승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기산인 적용대상은?

- 법률(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단서,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 단서)의 시행일인 '25.7.8. 이후에 공무로 사망·전사한 공무원으로,
 -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위계급·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(사망 후 특별승진)
- 다만, (위험직무)순직유족연금 수급자는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도 적용하되, 시행일 이후 급여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가산하여 지급

개정안 적용 급여		적용례
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	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	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 (단,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)
	②순직유족연금	
	③사망조위금	법 시행('25.7.8.)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
「공무원 연금법」	④퇴직유족일시금	
	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	
	⑥퇴직유족연금(특별)부가금	
	⑦퇴직수당	

Q2. 사망 후 특별슝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가산시 급여에의 영향은?

- **특별승진한 계급·직급·직위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**(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보수)을 **재산정**하여 **급여액이 증가**
 - (호봉제 적용자) 특별승진 전후 직급호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
 - ※ (호봉제 적용자가 연봉제 적용자로 특별승진시)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승진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봉급월액 증가분
 - (연봉제 적용자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(직급별 가산금)에 66%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
 - ※ (연봉제 적용자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자로 특별승진시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40 제1호·제2호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무급에 66%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

Q3. 사망 후 특별승진 급여가산은 누가, 어떻게 신청하는지?

- 추서 발생시 **연금취급기관**이 <**특별승진 임용사실 확인서**>와 **첨부 서류***를 공단(재해보상실 순직유족급여 담당)에 제출
 - * 인사발령문,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, 가족관계기록사항 자료 등
 - 새로운 급여의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의 청구 절차는 불필요

Q4. 유족이 없거나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?

- 공무원연금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
 - 유족이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따른 특례급여 지급
 - 유족이 둘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일괄수령 가능

Q5. 시행일 전 사망. 시행일 이후 특별슝진된 경우도 적용가늉한지?

-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**순직유족연금** 또는 **위험직무순직유족** 연금의 **수급대상**인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해 가산하여 지급 가능
 - 다만, 그 외 급여(퇴직유족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일시금, 유족연금부가금, 퇴직수당, 사망조위금 등)는 가산하지 않음

[퇴직일시금 합산반납금의 가산금리 변경]

Q1. 합산반납금 납부시 평균금리를 적용하는 대상은?

- 합산받고자 하는 종전 경력의 퇴직급여가 퇴직일시금인 경우에 적용
 - **퇴직연금일시금**과 **퇴직연금공제일시금**은 종전과 같이 해당연도 전국 은행 정기예금금리 중 **최고금리** 적용
- 다만, '26.1.1. 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이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가산이자 산정

[장애인 공무원 유선청구]

Q1. 전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, 그 대상은?

○ 재직기간이 4년 이하이거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인인 경우

Q2. 전화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?

○ **퇴직급여**(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연금공제일시금, 퇴직일시금)와 **퇴직** 수당을 전화로 청구 가능

Q3. 유선청구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
- 급여청구서와 증빙서류*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**공단 고객센터**에서 **본인** 확인 후 급여청구를 접수하며, 이후 급여심사 및 지급
 - * 다만, 장애인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모바일(알림톡)로 증빙서류 제출 필요

[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특례 대상 확대]

Q1.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특례가 무엇인지?

-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**종전**에는 **3자녀 이상 학자금**을 **공단**에서 **대여**한 경우 **상환 및 거치기간 특례 적용**
 - 2자녀의 대여학자금을 우선상환하고, 나머지 자녀의 학자금은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거치 가능했었음

Q2.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특례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?

- 상환특례 적용대상을 '3자녀 이상'에서 '2자녀 이상'으로 완화
 - 첫째 자녀의 학자금을 우선상환하고, 나머지 자녀의 상환은 1자녀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

Q3. 2자녀에 해당하는데, 상환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?

- '25.7.8. 이후에 2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시작하는 경우 적용
 - 상환도래월이 동일한 경우, **상환대상액이 적은 자녀**에 대해 **상환유예**
- '25.7.8. 이전에 학자금을 거치 또는 분할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단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익월부터 특례 적용 가능

Q4. 상환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?

- '25. 7. 8. 이후 상환대상자: 자동 상환유예
- '25.7.7. 이전 상환대상자: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- ※ 공단홈페이지(인증서로그인) 복지서비스 융자사업 대여학자금
 - 학생신상변동/상환조정신청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'다자녀상환유예' 선택

[증빙서류 간소화 등]

Q1. 해외수급자 신상변동 확인방식이 변경되었다는데?

- **매년 재외공관장 확인**을 통해 **수급자**의 **신상변동**을 **파악**하였으나,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**갈음**할 수 있는 **서류목록***을 **시행령에 명시**
 - * 출입국사실증명서, 세금신고증명서 등 거주 국가의 정부, 공공기관 및 병원 등에서 발급한 서류 중 수급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Q2. 유족의 장해상태 해소에 대한 증빙서류가 변경되었다는데?

- **종전에는 자녀·손자녀의 장해상태**가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하였으나,
 - 이를 「장애인등록법」상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 고객편의 제고